

[별표 10의2] <신설 2006.7.19>

측정기기의 종류·부착대상 사업장 및 부착방법(제29조관련)

1.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 사업장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대상 사업장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200m ³ 이상인 사업장과 영 별표 8에 따른 제1종 내지 제3종 사업장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측정기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측정기	
	부유물질량(SS) 측정기	
	총질소(T-N) 측정기	
	총인(T-P) 측정기	
적산전력계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사업장과 영 별표 8에 따른 제1종 내지 제5종 사업장
적산유량계	용수적산유량계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사업장, 영 별표 8에 따른 제1종 내지 제4종 사업장과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m ³ 이상인 사업장
	폐수적산유량계	

- 비고 : 1. 사업장의 지역적 여건이나 폐수의 특성이 달라 방지사설을 2개 이상 설치·가동하는 사업장은 방지사설별로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에는 부대시설인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Data Logger) 및 중간자료수집기(FEP, 최종방류구가 2개 이상인 사업장에 한한다)를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3.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전부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폐수가 최종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서 폐수의 순환·재이용 등을 하는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m³ 미만인 사업장
 - 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
 -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폐수종말처리시

설·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 처리할 예정인 사업장을 포함한다)

라. 영 제10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마.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이전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경우와 연간 30일 미만으로 조업하는 사업장

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회분식(Batch type)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서 원폐수 중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오염물질의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중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신고서, 오염도검사기관 측정결과, 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자료를 확인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 중에서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6. 적산전력계·용수적산유량계 또는 폐수적산유량계 부착대상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산전력계·용수적산유량계 또는 폐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수적산유량계 및 폐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영 제10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산전력계 및 폐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1종 내지 4종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폐수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수적산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한다.

다.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공동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폐수를 2차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1차 처리수 방류구에 각각 폐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에 부착하는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와 그 부대시설 및 폐수적산유량계는 측정기기로 측정·기록된 자료가 수질오염공정시험 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계센터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